

|                                                                                   |                                    |      |               |          |     |
|-----------------------------------------------------------------------------------|------------------------------------|------|---------------|----------|-----|
|  | <b>재정지원사업 예산 중복수혜<br/>방지위원회 규정</b> | 문서번호 | 3-1-37        |          |     |
|                                                                                   |                                    | 제정일  | 2020. 03. 13. |          |     |
|                                                                                   |                                    | 개정일  | 2022. 02. 18. |          |     |
|                                                                                   |                                    | 페이지  | 1/1           | 관리<br>부서 | 기획처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여자간호대학교의 재정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국고 사업간 중복 집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재정지원사업 예산 중복수혜 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국고의 효율적인 집행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각 호 사항을 심의·조정 한다.

1. 재정지원사업간 중복집행 방지에 관한 사항
2. 중복집행방지 이행에 관한 사항
3. 재정지원사업의 중복 예산계획 방지에 관한 사항
4. 재정지원사업의 중복 지출 방지에 관한 사항
5. 기타 재정지원사업간 중복집행방지와 관련된 제반사항

**제3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산학협력단장, 산학팀장을 포함한 5인 이내로 구성한다.

1. 위원장은 산학협력단장으로 한다.
2. 위원장과 당연직 이외의 위원은 본 대학 교직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
3. 위원장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가 필요한 경우나 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회의록)** ① 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며, 심의회의 의결을 거친 참석위원의 서명을 받는다.

**제6조(관계부서의 협조)** 위원회는 관계부서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제반 필요한 사항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03월 13일 부터 시행한다.

##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02월 18일 부터 시행한다.